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명시〉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92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소회의원 등 2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0.
3. 회부연월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원안보전담기관은 단순히 정보 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자원안보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비롯한 자원수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원안전담기관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u> 제8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 ----- <u>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u> -----.
<신설>	1. 제8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신설>	2. 제18조에 따른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의 수립·시행 지원
<신설>	3. 제37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분석·평가 지원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수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집행 지원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7조¹⁾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6조³⁾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중에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으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8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기준·절차, 전담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현행법 제정 시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석유, 천연가스 등 핵심자원 분야별로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6.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전담기관업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추 것

2. 전담기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추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추 것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원안전담기관이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원안보 관련 정보 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지원, 자원안보정책 연구개발 및 분석평가 지원, 자원수급의 안정성 제고 정책의 수립·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원안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자원안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또한 자원안전담기관의 업무를 자원안보 관련 정보 관리 외에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안전담기관의 업무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아닌 법으로 정하는 것은 자원안보 관련 법체계를 경직화시켜 정책현실의 변화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유사입법례를 보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담기관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례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

은 사례가 모두 존재하므로,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원안전담당기관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전담기관의 지정 입법례]

업무범위 명시 ○	업무범위 명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2.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3. 수소전문기업의 판로개척, 정보제공 및 경영·기술 등에 관한 자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5.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에너지법」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이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보건법」 제20조의4(전담기관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범위 명시 ○	업무범위 명시 ×
를 수행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분석 업무 2. 국내·외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분석 업무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기술적 타당성 및 안전도 검토 업무 4. 자동차 안전 관련 국제기준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및 국외사무소 운영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현황 등의 조사 및 분석 업무의 지원 2.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시책 수립 및 기술지도 작성 업무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원 4.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5. 제12조에 따른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지원 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지원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운영 등 환경보건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현행법 시행령⁴⁾ 제6조제3항은 자원안전담당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정안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원안전담당기관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포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자원안전담당기관의 업무(「국가자원안전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3항)]

1.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조사·연구
2. 자원안전 분야의 국내외 기술·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3. 법 제10조에 따른 자원안전의 진단·평가 및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망 점검·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이행 점검 지원
5. 법 제17조에 따른 비상동원광산 지정을 위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비상동원광산의 유지·관리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핵심공급기관 및 법 제22조에 따른 핵심수요기관 지정을 위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7.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지원 및 관리 지원
8.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전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9. 법 제37조에 따른 자원안전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10. 법 제38조에 따른 자원안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홍보

문 의 처

02)6788-5464

4) 2025. 2. 7. 시행